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78420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류형영, 문혜림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한상희

변론 종결2024. 7. 25.

판결 선고2024. 9.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콘텐츠 기획,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 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3. 4. 14.경 파산신청을 하여, 2023. 5. 16.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216호로 파산선고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4. 1. 31.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다.

3) E은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13. 9. 12.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10. 12. 16.부터 이 사건 회사의 파산종결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8. 26.부터 이 사건 회사의 파산종결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인 피고들, F, G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인 보통주식 10,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1,111주(이하, 위 보통주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가액 1,00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¹⁾

A 주식회사(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 및 아래에 정의된 회사의 대주주 또는 사실상의 지배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2013. 9. 보통주식(이하, "보통주"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한다) 인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이해관계인)

(1)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인수인이 본 계약 체결 당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3% 이상을 소유한 핵심기술인력, 기타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 다음의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회사의 의무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단 대주주가 아닌 경우 서면 동의 후 퇴사시 동향의 연대보증에서 제외한다.

제2장 주식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제11조(주식 발행 및 인수조건)

(1)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용

1. 수권주식수: 80,000주
2. 수권주식수의 종류 및 총수: 기명식보통주 80,000주
3. 1주의 액면가액: 5,000원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상환전환우선주
2. 인수할 보통주식의 총수: 10,000주
3. 인수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총수: 21,111주
4. 인수할 주식의 총수: 31,111주
7. 발행할 주식의 총액 1,000,000,000원(이하, "인수금액"이라 한다)

제14조(배당금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본 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의 주주는 우선배당 받는다. 피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인수인 혹은 인수인 대리인이 참여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배당액을 의미하며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생시 자본금을 제외한 초과분에 한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로 한다.

제3장 주식인수 후의 약정

제21조(협의 및 동의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5 내지 1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신설 및 기타 타회사에 대한 주식인수, 사채인수 등을 포함한 투자

(8) 관계회사, 임직원,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건당 50,000,000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200,000,000원 이상의 투자,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제22조(보고 및 자료제출)

(1) 회사는 인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에 의한 통지

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재산의 주요 변동사항

2.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2) 회사는 인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인수인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

1. 연차보고

i. 사업계획서 및 차기회계년도 추정재무제표

ii.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및 사업실적 보고서

iii.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반기보고

i. 반기 재무제표

ii.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기타보고

i. 인수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영업보고서

ii. 사업 또는 프로젝트 진행상황

iv. 기타 인수인이 요청하는 사항

v. 기타보고는 인수인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한다.

제23조(회계 및 업무감사)

- (1) 회사는 본 건 우선주식이 발행된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 인수인이 동의하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2) 인수인은 회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수인 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지명)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수인이 지명한 1인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4장 주식 등의 처분

제28조(인수인의 주식 처분)

- (1) 인수인은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인수인이 소유하는 본 건 보통주, 우선주(전환권 행사로 전환된 보통주식 포함) 및 동 주식에 대한 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게 된 일체의 주식(이하, '본 건 주식'이라 한다)을 처분할 수 있다.
- (2)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본 계약 이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처분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대상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인수인은 처분하고자 하는 처분대상주식수, 처분가격 기타 처분조건과 주식양수예정자 등 상세한 예정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의사 및 매수수량을 인수인에게 서면통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매수의사 및 매수수량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경우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인수인과 이해관계인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인수인의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인은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제5장 주식매수청구 및 위약벌

제30조(주식매수청구)

(1) 인수인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인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1.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제4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회사가 제21조, 제22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4.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20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5.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이해관계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7. 이해관계인이 고의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1) 회사가 기업공개된 날
 - (2)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2) 원고는 2013. 9. 13.2)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111,111주 중 피고 B이 45,690주(지분율 41.121%,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F이 16,798주(지분율 15.118%), 피고 C이 11,112주(지분율 10.001%), G이 4,000주(지분율 3.600%), H이 2,400주(지분율 2.160%), 원고가 보통주 10,000주(지분율 9.000%), 전환상환우선주 21,111주(지분율 19.0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1) 원고는 2023. 4. 5.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들 및 F,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제21, 22조 위반 등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라 한다).

2) 한편 피고들은 2023.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21, 22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를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7, 8항 위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2. 16.경 싱가포르 및 나이지리아 각 합작법인 설립 등 여러 건의 투자에 관하여 사전 서면통지 및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2, 23조 위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9 내지 2022년도 각 사업계획서, 2019, 2020년 각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2018 내지 2021년도 각 사업실적 보고서, 2018 내지 2023년 각 반기 재무제표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에게, 2023. 2. 8. 이 사건 회사 창업 이후 현재까지의 입출금 통장사본, 피고들 및 F의 주소지 정보, 차량 리스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2023. 2. 22.경 위 자료들과 함께 나이지리아 투자 관련 계약서 및 자금일지를 재차 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제14조 위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 제25조 위반] 원고는 2017. 2. 24.경 1을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7, 8항 위반 주장 관련]이 사건 회사는 원고 대표이사인 E에게 싱가포르 및 나이지리아 각 합작법인 설립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제22, 23조 위반 주장 관련]이 사건 회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요청하는 회계 자료를 모두 전달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계약 제14조 위반 주장 관련]이 사건 회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④ [이 사건 계약 제25조 위반 주장 관련]이 사건 회사는 2013. 9. 12. 이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인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7, 8항 위반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가 제1, 7, 10,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은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13. 9. 12.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F은 2015. 10. 29. 및 2015. 11. 2.경 싱가포르 출장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E도 위 이메일들을 수령3) 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은 2016. 2. 26. E에게 외부 투자내역 및 외부 투자 금액이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위 첨부된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5. 5. 26. 미디어 생성 및 광고, 콘텐츠 유통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3,400,000원, 2015. 10. 26. 인도네시아, 중국 광고솔루션 공급사업 목적으로 K회사(이하, 'K'라 한다)에 44,460,000원, 2015. 12. 30. 나이지리아 디지털 마케팅 사업 목적으로 L회사(이하, 'L'라

한다)에 60,078,000원, 2016. 1. 4. 영유아 콘텐츠 광고 사업 연계를 목적으로 M 주식회사에 4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2018. 3. 15. K 지분 매각의 건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E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점, ⑤ 피고 B은 2021. 2. 17. E에게 L가 청산된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5. 12. 16.경 설립된 싱가포르 및 나이지리아 각 합작법인 설립 등 여러 건의 투자에 관하여 사전 서면통지 및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2015. 12. 16.경 싱가포르 및 나이지리아 각 합작법인 설립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7, 8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23. 4. 5.에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제22, 23조 위반 주장 관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응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22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 제22조 제2항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원고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는 '원고가 정하는 기일 내에 원고가 요청하는 사항을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는 2023. 2. 8.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들 및 F 주소지 정보, 차량 리스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2023. 2. 22.경 피고 B에게 위 자료들과 함께 나이지리아 투자 관련 계약서 및 자금일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자료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요청한 이 사건 회사 창업 이후 현재까지 입출금 통장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 B은 2023. 2. 13.경 원고 대표이사 E에게 '통장내역을 익일 배송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통장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9 내지 2022년도 각 사업계획서, 2021, 2022년 각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2018 내지 2021년도 각 사업실적 보고서, 2018 내지 2023년 각 반기 재무제표를 각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 사건 계약 제23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실사 등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던 점, ② 피고 B은 2023. 8. 18. 원고 대리인인 류형영 변호사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한 공간을 대여하였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22조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 및 F, G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합계 77,600주(지분율 97.0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는 권리 등을 부여함에 동의하는 등 원고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을 승인하였고, 달리 다른 주주인 H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자, 비로소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 증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

② 비록 원고의 차등적 취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H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상법에서 일정한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8%를 취득하게 될 소수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목적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H이 원고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반대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5조 위반 주장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5조 위반은 이 사건 계약 제3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2)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28조 제1항은 '원고는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처분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대상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원고가 처분하고자 하는 처분대상주식수, 처분가격 기타 처분조건과 주식양수예정자 등 상세한 예정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의사 및 매수수량을 인수인에게 서면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당시 평가된 가액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 사건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실질은 계약의 해제와 유사하고,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위 해제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 호의 사유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위반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 3, 26,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의 2)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제22조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 위반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위 가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제22조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위반 사실을

배척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5조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기업공개된 날 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는 본 건 우선주식이 발행된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 원고가 동의하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조항들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수하게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회사가 기술 개발과 매출 확대에 성공하여 기업가치가 증대되고, 나아가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로써 투자수익을 거두는 데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채무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술 개발 및 매출 증대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3. 2. 8.경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들 및 F 주소지 정보, 차량 리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23. 2. 22.경 위 자료들 및 나이지리아 투자 관련 계약서 및 자금일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㉞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은 2017. 3. 20.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회사 이사들의 인적사항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㉟ 피고 B은 2016. 2. 26. E에게 외부 투자내역 및 외부 투자 금액이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위 첨부된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5. 12. 30. 나이지리아 디지털 마케팅 사업 목적으로 L에 60,078,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은 2021. 2. 17. E에게 L가 청산된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㊱ E은 위 자료 제공 거부 이전인 2022. 10. 26.경 이 사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투자금 회수 목적에 중대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자료제공에 협조할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③ 또한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9 내지 2022년도 각 사업계획서, 2021,

2022년 각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2018 내지 2021년도 각 사업실적 보고서, 2018 내지 2023년 각 반기 재무제표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㉗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피고 C은 2019. 5. 8.경 E에게 2019년 1분기 가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 B은 E에게, 2022. 2. 11.경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3. 2. 13.경 2023년도 사업계획안, 2023. 3. 21.경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를 각 이메일로 송부한 점, 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 사건 계약 제23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실사 등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고, 피고 B은 2023. 8. 18. 원고 대리인인 류형영 변호사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한 공간을 대여하였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한 점, ㉙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길 기대하였고, E은 2013. 9. 12.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년이 경과한 2023. 4. 5.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투자금 회수 목적에 중대한 위험성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이 사건 계약 위반 사항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자료제공에 협조할 의무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㉚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된 발생사유인 이 사건 계약 제22, 23조 위반 사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2023년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납입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 직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6. 5. 사임한 후 더 이상 임원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3. 4. 14.경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은 이 사건 회사의 파산신청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인 2023. 4. 5.이므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는 이 사건 회사가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겹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재정상황,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전후의 이 사건 회사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비록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후에는 주주로서가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위 '엑시트'를 목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이해관계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므로, 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혜

판사전경민

판사채지웅

-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인 F, G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F에 대한 소는 2024. 2. 1., G에 대한 소는 2024. 2. 9.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 2) 피고는, 원고가 '2013. 9. 16.'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2023. 10. 31.자 준비서면 4쪽), 이 사건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 변경일에 의한다.
- 3) 위 이메일의 참조에 기재된 '(이메일 1 생략)'은 E의 이메일로 보인다.